

등록신청서

[집합투자증권-신탁형]

2019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귀중
집합투자기구 명칭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 명칭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전화] 02-2126-3500
작성책임자 [직책] 상품&마케팅본부장 [성명] 박 종 석
[전화] 02-2126-363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판매기간)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등록신청서 2019년 4월 19일
작성 기준일
집합투자증권등록신청서 [집합투자증권등록신청서]
의 공시장소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금융위원회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코드	6695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재간접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코드	6695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3.29	최초 설정
2009.05.03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PCA 인도 주식모투자신탁 제I-1호 => PCA 인도 증권모투자신탁 제I-1호[주식]]
2009.11.18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신규 설정 자펀드 (PCA 퇴직연금 친디아 40 증권자투자신탁 제I-1호[채권혼합]) 정보 반영에 따른 변경
2010.01.29	- 자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과세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등
2010.09.01	- 집합투자업자 사명변경(PCA투자신탁운용 -> PCA자산운용) - 자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의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사항 기재정정 등
2012.02.14	- 집합투자업자 사명 및 펀드 명칭 변경 · 사명 : PCA자산운용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펀드명: PCA 인도 증권모투자신탁 제I-1호[주식]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2.09.0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2.25	- 펀드명칭 및 운용전략 일부 변경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8.05.23	-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인도 주식 → 외국 주식집합투자증권)에 따른 펀드 유형(주식형 → 주식-재간접형), 투자목적, 투자전략, 명칭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반영 - 환매 시 기준가격 적용일 연장
2019.03.04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대표전화: 02-2126-3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9.03.31 현재)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방대진	1974년생	상무	41개	7,083억원	<주요 운용경력> 해외투자 및 파생펀드 운용 - 06.01~10.09 하이자산운용 - 10.09~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서울대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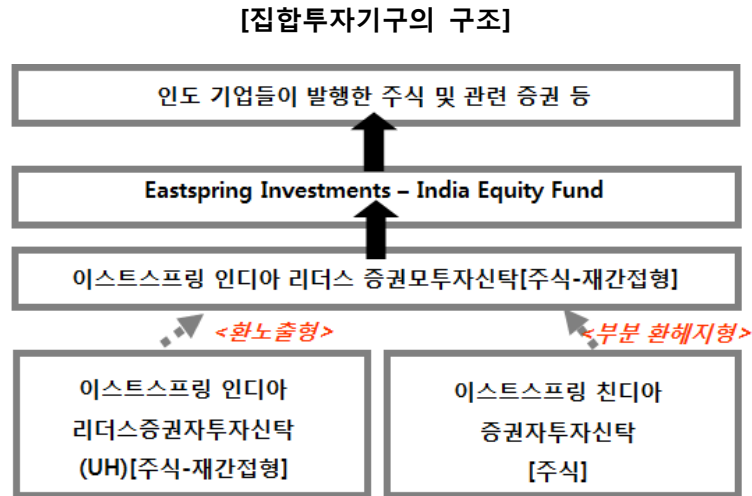
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Krishna Kumar
주요 운용경력	- 2009년 Eastspring Investments 입사 -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펀드매니저는 예고 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자투자신탁의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스트스프링 인디아 리더스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이스트스프링 친디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

다.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된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은 국제금융시장과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단,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0% 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②	주식채권및통화 관련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개별주권, 금리,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외국거래상대방과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 가능	법 제 234 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④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⑤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⑥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등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제 18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19 조제 7 호 및 제 19 조제 10 호 내지 제 11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19 조제 4 호 내지 제 5 호 및 제 7 호, 제 19 조제 10 호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또는 이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84조 적용)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까지 투자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서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 월간 적용</p>	
동일법인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p>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p>집합투자증권 투자</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목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1)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바.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상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p>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자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상기의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5) 상기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 (이하 “피투자 펀드”)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는 인도 기업¹⁾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증권²⁾ 가운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가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주1)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2) 관련 증권에는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 등이 있음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India Index(KRW) 100%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인도주식시장 인덱스로 인도주식 가운데 시가총액, 유동성 및 유동주식 비율 등을 감안하여 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들의 유동주식 시가총액을 반영하여 인덱스 산출

- 이 투자신탁은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벤치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홈페이지(www.eastspringinvestments.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개요]

(작성기준일: 2019년 2월 28일)

펀드명	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
펀드구조	룩셈부르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가변자본투자회사(SICAV)인 Eastspring Investments의 하위 집합투자기구
펀드 최초설정일	2005년 10월 17일
펀드 규모	미화 1억 5,660만 달러(원화 약 1,778억원)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장기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 전환사채, 우선주 및 워런트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다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주가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MSCI India Index 100%
펀드 표시통화	미국 달러화 (USD)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 (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 Limited)
주된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개별기업 분석과 상대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이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적 요인을 가미한 운용 전략 ▪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확신이 높은 투자가치 발굴에 주력 ▪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의 인도 주식운용팀(India Focus team)이 보유한 리서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주식시장에서 포착되는 투자기회를 발굴하는데 주력
담당 운용역	Krishna Kum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Eastspring Investments 입사 -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지난 2011년 5월 22일 등록되었으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해당 하위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상황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영국 프루덴셜주식회사 (Prudential plc UK) 의 계열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 과는 아무런 제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Eastspring Investments – India Equity Fund)의 집합투자업자인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Eastspring Investments Singapore)에서는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과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을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인도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출되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나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투자(노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등의 악화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p>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혜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p>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위험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인도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관련 증권 가운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보다 개별 종목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국가위험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인도에서 설립, 상장, 운영되거나 그곳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하거나 상당한 매출을 얻는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집중위험이 높아지고 특정 국가와 관련한 문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고 여러 국가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재적 변동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 거래제한, 자금유동성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인도 기업 주식 등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또는 특정 지역 투자펀드 대비 특정국가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해당국가의 경제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이슈, 외국인 투자제한, 미비한 법적 규제 및 불투명한 기업회계 등으로 인해 신흥시장 국가들에 대한 집중투자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 대비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 위험	<p>이 투자신탁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은 피투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략에 따라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나,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인도 주식시장의 성과가 일정 기간 지연되어 동 투자신탁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수익자가 이해하는 인도 주식시장의 성과와 동 투자신탁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p>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투자신탁이 수령하는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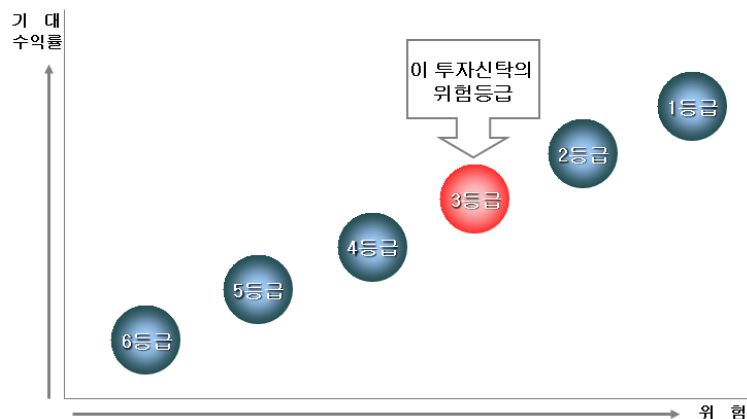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청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였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2.92%로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표준편차가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더 높은 투자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함께 투자대상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가치의 변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분류기준-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

위험 등급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동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 아래의 매입, 환매 적용기준은 투자자가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D	D+1	D+2	D+3
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5영업일	제6영업일	제7영업일	제8영업일
D	D+1	D+2	D+3	D+4	D+5	D+6	D+7
환매청구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 판매회사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전(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6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 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증개회사가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증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증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 가능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 기타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보수 및 수수료(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보수 및 수수료)등이 동 투자신탁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해당 자투자신탁의 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	매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	
신탁업자보수	-	
일반사무관리보수	-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¹⁾	연 0.1865%	
총보수 및 비용	연 0.1865%	-
총보수 및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²⁾	연 0.5865%	-
증권거래비용 ²⁾	연 0.4377%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8.03.28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합성 총보수 비용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포함하는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총보수 및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8.03.28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

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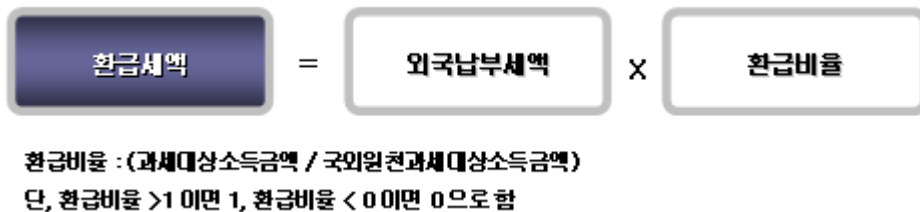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이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익자의 환매청구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증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

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됨.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9기, 제10기 및 제11기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11 기 20180328	제 10 기 20170328	제 9 기 20160328
I. 운용자산	44,347,568,648	33,273,239,892	33,151,925,611
증권	41,402,261,439	32,243,662,660	30,482,461,977
현금 및 예치금	2,945,307,209	1,029,577,232	2,369,463,634
기타운용자산			300,000,000
II. 기타자산	550,848,295	260,871,835	101,755,937
자산총계	44,898,416,943	33,534,111,727	33,253,681,548
II. 기타부채	864,196,269	172,881,434	85,427,193
부채총계	864,196,269	172,881,434	85,427,193
I. 원본	39,603,539,985	30,968,368,845	35,789,391,336
II. 수익조정금	1,414,528,860	146,522,491	-305,289,247
III. 이익잉여금	3,016,151,829	2,246,338,957	-2,315,847,734
자본총계	44,034,220,674	33,361,230,293	33,168,254,355
I. 운용수익	702,787,722	4,937,587,161	-2,163,421,406
이자수익	9,644,902	5,127,944	10,232,759
배당수익	466,058,208	398,113,355	567,807,170
매매/평가차익(손)	221,299,887	4,532,286,812	-2,747,480,193
기타이익	5,784,725	2,059,050	6,018,858
II. 운용비용	79,497,341	70,111,223	152,426,328
기타비용	79,497,341	70,111,223	152,426,328
III. 당기 순이익	623,290,381	4,867,475,938	-2,315,847,734
* 매매회전율	91	100	116

※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20180328	20170328	20160328
I. 운용자산	44,347,568,648	33,273,239,892	33,151,925,611
(1) 현금 및 예치금	2,945,307,209	1,029,577,232	2,369,463,634
현금 및 현금성자산	2,945,307,209	1,029,577,232	2,369,463,634
(2) 대출채권			30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00,000,000
(3) 유가증권	41,402,261,439	32,243,662,660	30,482,461,977
지분증권	41,402,261,439	32,243,662,660	30,482,461,977
II. 기타자산	550,848,295	260,871,835	101,755,937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44,859,211	240,811,000	77,741,701
미수이자	865,712	402,797	505,304
미수배당금	5,123,372	19,658,038	23,496,275
기타자산			12,657
자산총계 (I + II)	44,898,416,943	33,534,111,727	33,253,681,548
II. 기타부채	864,196,269	172,881,434	85,427,193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853,172,313	165,605,993	
해지미지급금			50,200,000
수수료미지급금	110,000	110,000	110,000
기타미지급금	10,913,956	7,165,441	35,117,193
부채총계 (I + II)	864,196,269	172,881,434	85,427,193
I. 원본	39,603,539,985	30,968,368,845	35,789,391,336
원본액	39,603,539,985	30,968,368,845	35,789,391,336
II. 이익잉여금	3,016,151,829	2,246,338,957	-2,315,847,734
이월이익잉여금	2,392,861,448	-2,621,136,981	0
당기순이익	623,290,381	4,867,475,938	-2,315,847,734
III. 설정조정금	2,515,747,920	20,557,992	-213,952,916
IV. 해지조정금	-1,101,219,060	125,964,499	-91,336,331
자본총계 (I + II + III + IV)	44,034,220,674	33,361,230,293	33,168,254,355
* 총좌수	39,603,539,985	30,968,368,845	35,789,391,336
* 기준가격	1,111.88	1,077.27	926.76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손익계산서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20170329-20180328	20160329-20170328	20150329-20160328
I. 운용수익	702,787,722	4,937,587,161	-2,163,421,406
(1) 투자수익	481,487,835	405,300,349	584,058,787
이자수익	9,644,902	5,127,944	10,232,759
배당수익	466,058,208	398,113,355	567,807,170
기타이익	5,784,725	2,059,050	6,018,858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5,532,686,711	6,518,035,334	5,585,272,856
지분증권매매차익	5,071,885,697	6,054,173,258	4,310,425,812
외환거래차익	460,801,014	463,862,076	1,274,847,044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5,311,386,824	1,985,748,522	8,332,753,049
지분증권매매차손	3,029,757,989	956,488,955	7,114,606,035
외환거래차손	2,281,628,835	1,029,259,567	1,218,147,014
II. 운용비용	79,497,341	70,111,223	152,426,328
감사인보수비	110,000	110,000	110,000
기타비용	79,387,341	70,001,223	152,316,328
III. 당기순이익 (I - II)	623,290,381	4,867,475,938	-2,315,847,734
* 총좌수	39,603,539,985	30,968,368,845	35,789,391,336
* 당기순이익(좌당 or 1000좌당)	15.74	157.18	-64.7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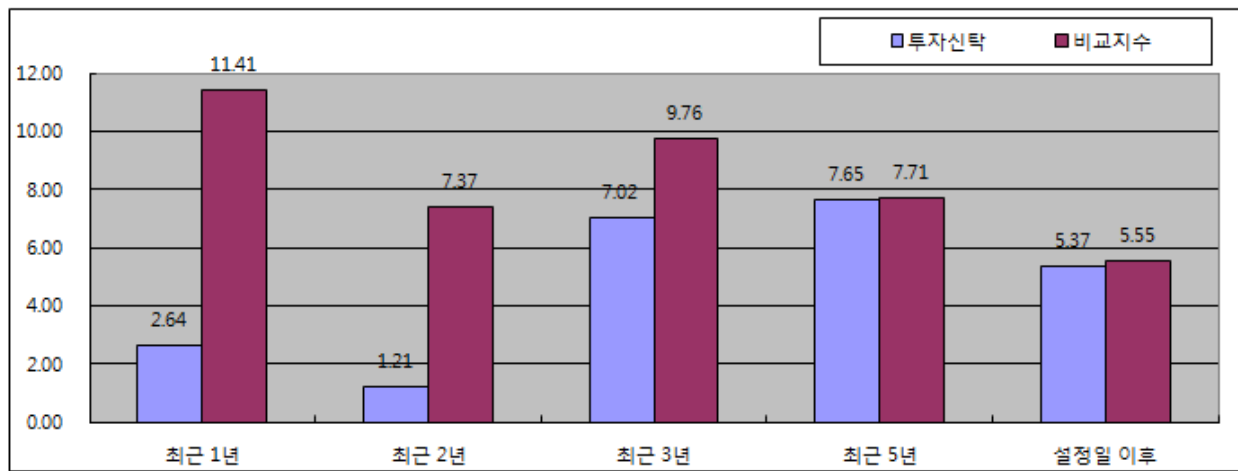
(단위: 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이익분배에 따른 자투자분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50329 - 20160328	32,264,267,138	32,264,267,138	15,419,987,867	15,206,034,951	11,894,863,669	11,986,200,000	35,789,391,336	35,484,102,089	0	0
20160329 - 20170328	35,789,391,336	35,789,391,336	2,071,742,008	2,092,300,000	6,892,764,499	6,766,800,000	30,968,368,845	31,114,891,336	0	0
20170329 - 20180328	30,968,368,845	30,968,368,845	14,833,452,080	17,349,200,000	6,198,280,940	7,299,500,000	39,603,539,985	41,018,068,845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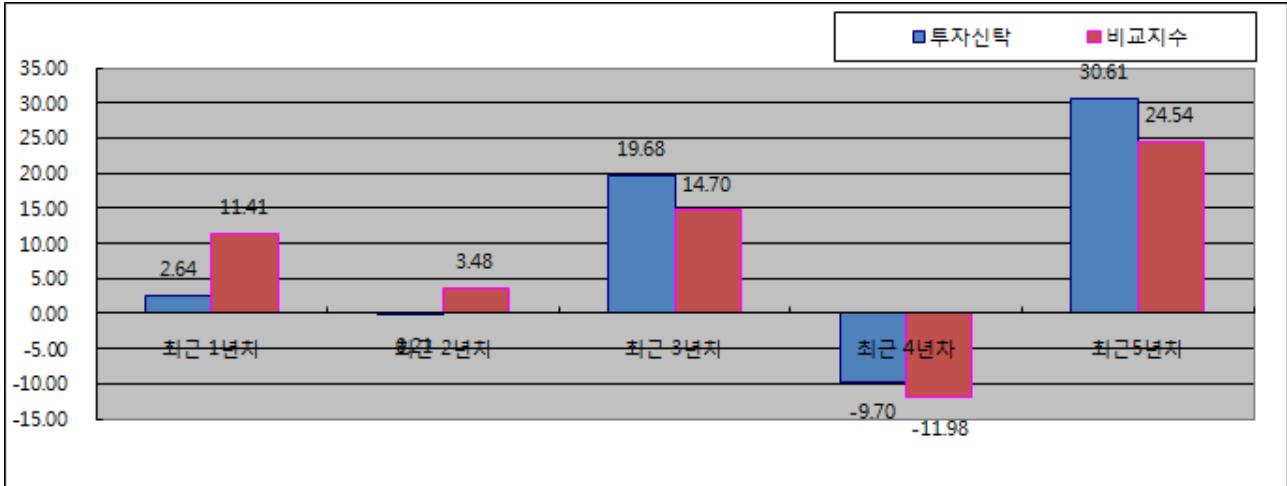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4.01 ~ 19.03.31	17.04.01 ~ 19.03.31	16.04.01 ~ 19.03.31	14.04.01 ~ 19.03.31
투자신탁	2.64	1.21	7.02	7.65	5.37
비교지수	11.41	7.37	9.76	7.71	5.55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India Index(KRW) 10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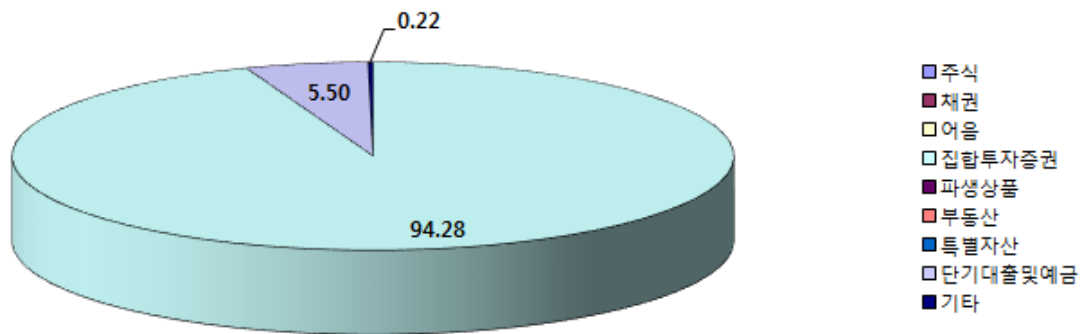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8.04.01 ~ 19.03.31	17.04.01 ~ 18.03.31	16.04.01 ~ 17.03.31	15.04.01 ~ 16.03.31	14.04.01 ~ 15.03.31
투자신탁	2.64	-0.21	19.68	-9.70	30.61
비교지수	11.41	3.48	14.70	-11.98	24.54

※ 비교지수(벤치마크) : MSCI India Index(KRW) 100%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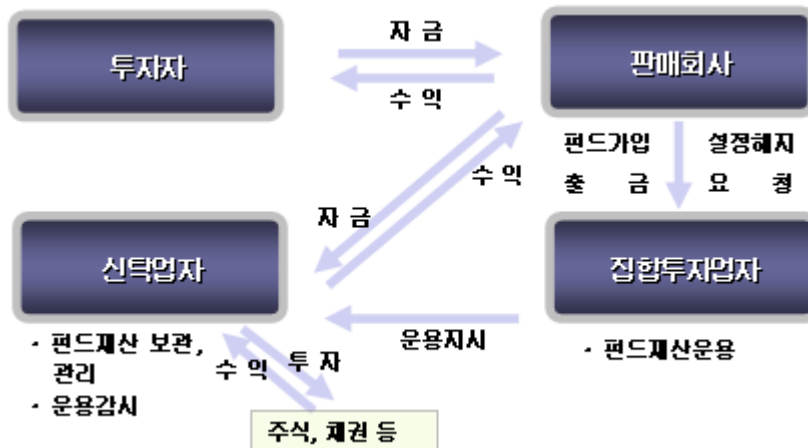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1	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6.14)	(3.86)	(6.00)
USD	0	0	0	14	0	0	0	0	0	0	0	14
	(0.00)	(0.00)	(0.00)	(99.88)	(0.00)	(0.00)	(0.00)	(0.00)	(0.00)	(0.12)	(0.00)	(94.00)
합계	0	0	0	14	0	0	0	0	0	1	0	15
	(0.00)	(0.00)	(0.00)	(94.28)	(0.00)	(0.00)	(0.00)	(0.00)	(0.00)	(5.50)	(0.22)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 외화표시 자산은 기준일 현재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종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 02-2126-3500,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07 제로인 2002년 상반기 결산 채권형 1위 운용사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p>2006.02 2006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Awards - 한국 주식형(3년) 베스트 운용사 선정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PCA 뉴실크로드펀드 Korea부문 Most Innovative Product로 선정)</p> <p>2008.12 제로인 선정 2008년 Fund Award 수상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및 중국주식형 펀드</p> <p>2009.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 펀드(국내 채권형 부문)</p> <p>2010.07 P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p> <p>2010.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China Dragon A Share 증권 펀드(해외 주식형 부문)</p> <p>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로 사명 변경</p> <p>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p> <p>2015.01 2014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Best Korean Equity Manager로 선정)</p> <p>2015.02 제로인 선정 2015년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p> <p>2015.02 매일경제 선정 2014 한국펀드대상 우수상 수상(국내혼합형펀드 부문)</p> <p>2015.03 2015년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p> <p>2015.03 AsianInvestor 2015 Korea Awards 수상 -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펀드(Best New Fund Launch 부문)</p> <p>2016.02 제로인 선정 2016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수상 -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 펀드(중국 주식형 부문)</p> <p>2016.02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채권형펀드 운용사</p> <p>2017.03 2017년 모닝스타어워드 펀드상 수상 (중국 주식형 부문)</p>
자본금	227억원
주요주주현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 등을 통하여 지난 16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 (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2018	FY2017	FY2016	계정과목	FY2018	FY2017	FY2016
자산총계	54,609	53,109	52,173	1. 영업수익	22,135	28,359	29,027
1. 현금 및 예치금	18,501	19,944	23,616	2. 영업비용	19,101	22,737	18,861
2. 유가증권	0	0	0	3. 영업이익	3,034	5,622	10,167
3. 대출채권	0	0	0	4. 영업외수익	155	13	321
4. 유형자산	457	542	599	5. 영업외비용	230	65	305
5. 기타자산	35,650	32,624	27,958	6. 경상이익	2,959	5,570	10,183
부채 및 자본총계	54,632	53,109	52,173	7. 특별이익	0	0	0
1. 예수부채	208	213	313	8. 특별손실	0	0	0
2. 기타부채	7,425	8,196	7,977	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2,959	5,570	10,183
3. 부채총계	7,633	8,409	8,291	10. 법인세비용	659	1,253	2,264
4. 자본금	22,700	22,700	22,700	11. 당기순이익	2,299	4,318	7,919
5. 이익잉여금	24,146	21,847	21,029				
6. 자본잉여금	190	190	190				
7. 자본조정	-37	-37	-37				
8. 자본총계	46,999	44,700	43,882				

라. 운용자산 규모

[2019.03.3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지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0,390	24,635	2,461	0	621	7,343	0	261	1,596	0	5,236	52,5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봉래동 1가) 연락처 : 1588-177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등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연락처: 02-2180-04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	----------------------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율패로 88(운니동 98-5) 연락처 02-399-335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연락처 : 02-398-390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여의도동) 연락처 : 02-3215-14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연락처 02-721-53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참조)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은 제외)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2) (1)의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투자 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자투자 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5)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6)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8)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9)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2)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p>[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p> <p>가.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마케팅비용 라.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p>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용 어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규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 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 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기한까지 환매가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 이내 또는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 또는 환매대금의 일정 수준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자산으로 귀속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환율이 하락(원화강세)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